

[변경 대비 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판	드	명	BNK법인MMF1호(국공채)
변	경	서	류
변	경	사	유
효	력	발	생 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현행과 동일)
제6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)	문구 조정	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20조좌로 한다.	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<u>수종의</u>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20조좌로 한다.
제7조(추가신탁)	문구 조정	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,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,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<u>수종의</u>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,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,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4조(수익자명부)	자본시장법 시행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

	<p>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</p>	<p>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 ⑧ (생략)</p>	<p>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</u>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<u>종류 및 좌수</u>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 ⑧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① 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동일)</p>
<p>제29조(집합투자재산 평가)</p>	<p>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</p>	<p>① <신설></p>	<p>①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(이하 이 조에서 "안정적 자산 비중"이라 한다)이 30%를 초과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.</p> <p>1. 현금</p> <p>2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</p> <p>3. 양도성 예금증서</p> <p>4.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「우체국예금·보</p>

		<p>② <신설></p> <p>③ <신설></p>	<p>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 서예의 예치</p> <p>5.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 채 또는 어음(기업어음증권을 포 함한다)</p> <p>6. 금융투자업규정 제7-19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. 다만, 환매 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 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 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 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-19 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.</p> <p>7.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, 법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 음 또는 단기사채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되, 제1 항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 득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안정적 자 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시가평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 며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 · 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장 부가격으로 평가한다. 다만, 집합 투자업자는 안정적 자산비중 감 소, 장부가격과 시가의 괴리율 확 대 등 선환매유인 발생이 우려되 는 위기상황에서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이 투자신탁재 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관 련 조치는 제29조의2에 따른다.</p>
--	--	---	---

		<p>①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.</u> 1. ~ 2. (생략)</p> <p>② <u>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법시행령 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차이가 1,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<신설></p>	<p>④ <u>본조에서 장부가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.</u> 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<u>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법시행령 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, 그 차이가 1,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본조에서 시가평가란 법 제 2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,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
<p>제29조의2(선환매유인 관리조치)</p>	<p>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</p>	<p>① ~ ⑥ <신설></p>	<p>①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7-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</u></p>

			<p>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, 해당 방안이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(30%)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, 평가방법 변경(시가평가),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
제34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	문구 조정	<p>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① 투자신탁을 ---<u>(생략)</u>--- 보고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</p>	<p>① 투자신탁을 ---<u>(생략)</u>--- 보고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</p>

	<p>우</p> <p>② 투자신탁을 ---(생략)--- 보고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<u>제50조에 따라</u> <u>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</u>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을 ---(생략)--- 보고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<u>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</u> <u>공시하거나 전자</u> <u>등록기관을 통하여</u>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을 ---(생략)--- 보고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<u>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</u> <u>공시하거나 전자</u> <u>등록기관을 통하여</u>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<부칙 11></p>	<p><신설></p>	<p><부칙 11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투자신탁 약관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<부칙 11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투자신탁 약관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끝>